

전문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법인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고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전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임원 및 감사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
2. 예산,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(단,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
4.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
5.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 전문위원은 6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- ② 전문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전문위원회의 의장은 법인의 회장으로 한다.

제4조(전문위원의 선출과 임기) ① 전문위원의 2분의 1은 매년 선출하되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잔여임기가 있는 전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-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전문위원회의 소집) ① 전문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
- ②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의결정족수) ① 전문위원회는 재적전문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전문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.

- ② 제1항의 경우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명예전문위원) ① 전문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전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

- ② 명예전문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③ 명예전문위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④ 명예전문위원은 전문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